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규정

- 제정 : 2013. 7. 12.
- 개정 : 2018. 3. 1.
- 개정 : 2019. 6. 18.
- 개정 : 2021. 9. 1.
- 개정 : 2021. 12.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계획(설치학과 및 모집 인원)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사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삭제.
8.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임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산업체 임직원의 구성비를 1/2 이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